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11. 25 선고 2021가단10517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

담당변호사 강경철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1. 11. 4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5.

## 주 문

1. 피고와 B(C생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7. 2. 2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7. 5. 24. 접수 제9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가 B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68111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07. 11. 28. ‘B는 원고에게 13,954,665원 및 그 중 13,524,121원에 대하여 2003. 6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B를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6080 사건에서 2017. 10. 16. ‘B는 원고에게 62,254,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0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8. 1. 3. 확정되었다.

다. D가 2017. 2. 20. 사망하였는데, 그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피고, B, E, F는 같은 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라.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7. 5. 2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바. 2021. 7. 13.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13,524,121원, 지연손해금 56,707,186원 등 합계 70,231,307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1/4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

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 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### 1)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미 B의 다른 채권자인 G 유한회사(이하 'G회사'라 한다)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하여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G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1/4 지분에 상응한 1,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.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B의 다른 채권자인 G회사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위 금원은 채무자 B의 일반재산으로 회복되어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었고, 피고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,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### 2) 판단

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(민법 제407조)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(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).

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B의 채권자인 G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716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소송 진행 도중 G회사가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2017. 12. 6.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G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,000만 원은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

없으므로(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)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아니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여전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[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, 살펴본다. 피고는 채무자인 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오랜 기간의 도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억할 수 없었기에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 B가 채권자들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[B는 원고에 대한 채무(원금만 13,524,121원에 달한다) 외에도 위 G회사에 대한 채무(원금만 15,488,490원에 달한다)도 부담하고 있었다.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7. 2. 20. 채무자 B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]. 또한 피고는 수익자로서 선의의 항변을 하나,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B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]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권홍

별지

## 목 록

1. 경남 창원군 H 대 330㎡
2. 위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74.95㎡

1) 위 일시에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